

# 2023년도 세입 · 세출예산(안)



사상구가족센터

# 1. 예산 총칙

제1조(예산의 규모) 2023년도 세입·세출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.

## ○ 예산총액

(단위 : 원)

구 분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(4차추경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3,629,543,360	3,003,331,253	4,487,260	0.15%

## ○ 세입예산

(단위 : 원)

구 분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(4차추경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3,629,543,360	3,003,331,253	626,212,107	20.85%
사업 수입	579,108,360	440,965,120	138,143,240	31.33%
보조금 수입	2,992,359,000	2,529,335,000	463,024,000	18.31%
후원금 수입	7,650,000	15,780,000	-8,130,000	-51.52%
전 입 금	7,000,000	7,000,000	0	0
이 월 금	43,416,000	10,241,133	33,174,867	323.94%
잡 수 입	10,000	10,000	0	0

○ 세출예산

(단위 : 원)

구분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(4차추경)	증감액	증감률
총계	3,629,543,360	3,003,331,253	626,212,107	20.85%
사무비	469,536,000	374,949,499	94,586,501	25.23%
재산조성비	1,450,000	3,507,000	-2,057,000	-58.65%
사업비	3,154,497,360	2,619,369,770	535,127,590	20.43%
잠지출	0	0	0	0
예비비및기타	4,060,000	5,504,984	-1,444,984	-26.25%

**제2조(예산의 내역)** 2023년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붙임과 같다.

**제3조(추가경정예산)** 추경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.

**제4조(예산의 전용)** ① 예산의 관건 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.

② 예산의 항간 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되, 100만원 이하의 예산 변경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.

③ 예산의 목간 전용은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.

**제5조(예비비)**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지출 초과에 총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1% 내외를 예비비로 계상한다.

②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추후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6조(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)** 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 지침을 준용한다.